간호학과 운영내규

제정 2013.03.01.
제2차(전면)개정 2016.02.04.
개정 2018.12.28.
개정 2020.06.29.
개정 2022.07.08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학칙을 준용하여 간호학과(이하 "본 학과"라 한다)의 학사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본 학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학과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28, 2022. 7. 8.>

② 본 학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③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교육과정 편성위원회, 학습성과평가위원회, 본 실습운영위원회, 학생지도위원회, 산학협력촉진위원회, 입학전형관리위원회, 학과 발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28.>

④ 분야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본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.

제3조(회의) ① 학과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2. 7. 8.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록은 전체 교수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5년간 보관한다. <개정 2022. 7. 8.>

제4조(학과장 업무) ① 제1학과장은 학과의 대표성을 가지며, 학과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.

② 학과장은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다음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, 예산 편성 및 운영, 인사 관리, 학과 발전의 지속적인 질 관리, 기타 학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학과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, 교육과정과 교육성과의 지속적인 질 관리,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3. 학사업무, 학생지도 및 취업 지도, 교내실습 운영 및 실습의 지속적인 질 관리, 기타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
4. 현장실습(임상실습, 교직실습) 기관 선정 및 운영, 실습의 지속적인 질 관리,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22. 7. 8.]
[제목개정 2022. 7. 8.]

제5조(간호학과 교수회의) ① 본 학과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둔다.

② 교수회의는 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
2. 본 학과의 분야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3.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

[제6조에서 이동 <2022. 7. 8.>]

제6조(간호학과 운영위원회) ① 본 학과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, 학과장, 본 학과 전임교수, 외부 인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

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 <개정 2022. 7. 8.>

③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2. 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
3. 입학사정 및 자체 평가 실시
4.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

[제7조에서 이동 <2022. 7. 8.>]

제7조(교육과정편성위원회)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둔다.

② 간호학과 교육과정편성위원회는 학과장, 본 학과 전임교수, 산업체 인사,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담당학과장이 된다. <개정 2022. 7. 8.>

③ 간호학과 교육과정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 편성
2. 교육과정 운영 점검
3. 수요자 의견수렴
4. 자체평가
5. 기타 학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[제8조에서 이동 <2022. 7. 8.>]

제7-1조(실습운영위원회)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실습운영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2. 7. 8.>

② 실습운영위원회는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 담당 전임교수 등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담당학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2. 7. 8.>

1. 임상실습기관 선정
2.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운영 <개정 2022. 7. 8.>
3.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의 지속적인 질 관리 <개정 2022. 7. 8.>
4. 기타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 7. 8.>

[본조신설 2018. 12. 28.]

[제8조에서 이동 <2022. 7. 8.>]

[제목개정 2022. 7. 8.]

제8조(학습성과평가위원회)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학습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간호학과 학습성과평가위원회는 본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담당학과장이 된다. <개정 2022. 7. 8.>

③ 간호학과 학습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습성과평가 계획
2. 학습성과평가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
3. 학습성과평가
4. 학습성과의 지속적인 질 관리
5. 기타 학습성과에 관한 사항

[제9조에서 이동 <2022. 7. 8.>]

제9조(학생지도위원회)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.

② 간호학과 학생지도위원회는 본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담당학과장이 된다. <개정 2022. 7. 8.>

③ 간호학과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2.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
3. 장학업무

4. 교학간담회
5. 졸업생 추수지도
6. 학생 안전 등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 12. 28.>
[제10조에서 이동 <2022. 7. 8.>]

제10조(산학협력촉진위원회)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산학협력촉진위원회를 둔다.
② 간호학과 산학협력촉진위원회는 담당학과장, 본 학과 전임교수, 산업체 인사,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제1학과장이 된다. <개정 2022. 7. 8.>
③ 간호학과 산학협력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취업 및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사항
2. 산학협력 연구 및 자문활동
3.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[제11조에서 이동 <2022. 7. 8.>]

제11조(입학전형관리위원회)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.
② 간호학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제1학과장이 된다. <개정 2022. 7. 8.>
③ 간호학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입학전형방법
2. 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
3.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
[제12조에서 이동 <2022. 7. 8.>]

제12조(간호학과 발전위원회)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발전위원회를 둔다.
② 간호학과 발전위원회는 학과장, 본 학과 전임교수, 본 학과 동문회장, 산업체 인사,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제1학과장이 된다. <개정 2022. 7. 8.>
③ 간호학과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발전계획 수립
2. 발전기금 조성, 운영 및 관리
3. 기타 본 학과 발전에 관한 사항
[제13조에서 이동 <2022. 7. 8.>]

제13조(학과 운영지원 인력의 임무)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행정지원인력과 실습조교를 두며, 학과 운영지원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 6. 29, 2022. 7. 8.>
1. 행정지원인력은 교무, 장학, 취업, 교내실습과 현장실습, 학과사업 운영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 6. 29, 2022. 7. 8.>
2. 실습조교는 실습실과 실습기자재 관리, 실습준비 및 정리, 자율실습 지도 및 관리 등 실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2. 7. 8.>
3. 기타 간호학과 행정 및 실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 6. 29, 2022. 7. 8.>
[제13조에서 이동 <2022. 7. 8.>]
[제목개정 2020. 6. 29, 2022. 7. 8.]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